

## 2018년 고령자친화기업 공모

노인의 연륜과 능력을 활용하여 민간영역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고령자친화기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18년 3월 9일  
보건복지부 장관

### 1. 사업개요

사업명 : 2018년 고령자친화기업 공모

사업정의

- 고령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적합한 직종에서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하여 운영할 기업을 지원

지원분야

사업유형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정	기업인증형	다수의 고령자(만 60세 이상)를 고용하고 있고, 추가 고용계획이 있는 기업	개소당 최대 2억원 이내
	모기업연계형	모기업의 자원을 연계하여 설립된 기업	개소당 최대 3억원 이내
신규설립	시장형사업단 발전형	성과가 우수한 시장형사업단이 자립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형태	개소당 2억원
	브릿지형	지역 특성을 반영한 소규모 사업이 고령자친화기업으로 발전된 형태	개소당 1억원
	시니어직능형	퇴직노인의 숙련된 기술과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형태 * (직장형) 신청기관(기업)이 민간기업 또는 공공기관인 경우 * (직능형) 신청기관이 유사동종 직능을 보유한 퇴직자로 구성된 법인	개소당 최대 3억원 이내

## 2. 신청요건

### □ 신청자격

- (기업인증형) 업종별 고령자 기준고용율\*을 충족한 기업중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60+ 추가고용(최소 10명 이상, 4대보험가입, 최저임금 준수)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인력파견 유사업종은 지원 제외)

※ 공모 신청을 위해 기 근로자의 인위적 감원 조치 제한(최근 6개월)

\* 접수일 기준 신청 사업의 전체 근로자수에 대한 만 60세 이상 근로자 수의 비율

\*\* 예) 농업업종 기업에서 신청의 경우(전체 근로자 수 20명)

- 기준 고용율(농업) 6%
- 만 60세 이상 근로자 기준인원 : 전체근로자 20명 × 6% = 1.2명
- 만 60세 이상 근로자 **2명 이상일 경우** 지원 가능(소수점 이하는 절상)

<업종별 기준 고용률>

구 분	기준 고용률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35~36)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58~63) 금융 및 보험업(64~66)	1%	
건설업(41~42) 숙박 및 음식점업(55~5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0~7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90~91)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94~96)	4%	
농업, 임업 및 어업(01~03) 운수업(49~52)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생산활동(97~98)	6%	
광업(05~08)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37~39)	7%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74~75)	○ 사업시설유지관리서비스업(74100), 경비 및 경호서비스업(75310)	12%
	○ 건축물일반청소업(74211), 소독, 구충 및 방제서비스업(74220), 탐정및조사서비스업(75330)	23%
	○ 기타 업종	7%
국제 및 외국기관(99)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68~69)	23%	
그 밖의 업종	2%	

\* 출처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96호(2018.01.01.),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업종별 지원기준율

\* 사업에 대한 구분은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적용

- (모기업연계형) 공고일 기준 이전 고령자(만60세 이상)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적합한 직종에서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을 신규 설립 가능한 법인
  - 민법상 법인, 상법상 회사합자조합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복수의 민간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가능)
- (시장형사업단 발전형)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시장형사업단을 수행중인 법인 또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
  - ※ 전년도 시장형사업단 성과진단 결과 2그룹 이상 사업단만 신청 가능
- (브릿지형) 지역내 소규모 사업을 운영중 또는 계획 중인 법인 또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
- (시니어직능형) 전문경력을 보유한 모기업 퇴직자로 구성되며 모기업 및 직능단체(퇴직자단체, 직능단체)에 등록된 법인
- (대응투자 이행) 직접 또는 다른 기관을 통해 지원 신청액의 일정 비율(유형별 최소기준\*)이상 대응투자 요건 충족

\*유형별 최소기준 : 기업인증형(없음), 모기업연계형(70%이상), 시장형사업단 발전형(없음), 브릿지형(없음), 시니어직능형(직장형 70% 이상, 직능형 20% 이상)

#### < 대응투자 집행기준 >

- 신청기관이 고령자친화기업 설립·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현금투자에 한함
- 지자체(정부)가 참여하는 사업의 경우 무상제공 되는 부동산(토지, 건물) 등의 공식 감정가액의 10%를 현금투자로 인정 (단, 소유권 이전 시 전액 인정)
  - ※ 현물투자(부동산, 시설장비류, 차량 등)는 소유권 이전 및 대여방식, 대여기간 등 투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대응투자 이행계획서 제출 (감정가액 환산적용)
- 대응투자 이행완료 확인 후 예산지원 (선 대응투자 → 후 예산지원)  
사업비는 국고보조금과 기업 대응투자금(자부담)으로 구성

## □ 신청제한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으로부터 사업 중단 조치를 받은 기관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동 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신청 법인이나 그 법인 대표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최근 3년 내 한국 노인인력개발원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계약해지를 받은 법인  
나. 기업의 부도, 화의 및 법정관리중인 기업  
다.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경우  
라.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휴·폐업중인 기업  
마. 법인의 대표나 임·직원이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보조금 횡령으로 고소·고발되어 재판에 계류중이거나, 유죄를 선고받고 형 집행 종료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바. 기타 보조사업 신청자격, 수행능력이 없는데도 자격을 위조하거나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등
- ※ 기타 최저임금법, 직업안정법 등 고용관계법령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하여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선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음

## 3. 지원내용

- 지원 개소 수 : 예산범위 내 36개소 내외
- 유형별 최소 고용목표 인원

구분	기업인증형	모기업연계형	시장형사업단발전형	브릿지형	시니어직능형
최소 고용목표	10명	10명 ~ 20명	10명	5명	10명 ~ 20명

※ 모기업연계형, 시니어직능형은 업종별 최소 고용인원 가이드 적용

**<업종별 최소 고용인원 가이드>**

대분류 (7)	중분류 (24)	고용 목표 (최소인원)	포함 업종(세분류)
1.제조업 (13)	1.기계 및 장비	10명	- 일반목적용 기계 및 특수목적용 기계
	2.섬유 및 가죽	10명	- 면직물, 모직물, 침구 및 원단, 가죽제품 등 관련 제품 원재료 가공 및 생산
	3.농림수산	10명	-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 등의 원시생산(동식물)및 작물재배·가공 -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채소 및 과실재배, 화훼 작물 재배, 기타 약용작물 등
	4.광산품	10명	- 원유 및 광물채굴 등 기타 광업지원 서비스
	5.목재 및 종이인쇄	10명	- 가공목재, 코르크제품, 목재상자 및 기타 목제품, 골판지상자, 골판지, 종이용기 등 기타 종이제품
	6.부동산 및 임대	10명	- 주거용 건물임대 및 관리, 부동산 관리·자문업
	7.화학제품	10명	- 합성고무, 플라스틱, 비료 등 기타 화학제품
	8.비금속광물제품	10명	- 유리 및 유리제품, 가정용 도자기(개수대, 번기 등), 기와, 벽돌, 건설자재 및 기타 가구 제조업 등
	9.금속제품	10명	- 금속문, 창, 셔터, 금속공작물, 보일러, 저장용기 등 그 외 분류안된 금속가공제품
	10.전기 및 전자기기	10명	- 컴퓨터 및 주변장치, 통신 및 방송장비, 전자부품 등 기타 광학기
	11.운송장비	10명	- 자동차, 선박, 보트, 철도차량, 자전거 등 기타 분류되지 않은 운송장비(수레, 카트 등)
	12.석탄 및 석유제품	10명	- 석유 및 석탄정제품(연탄 및 기타가공)
	13.1차 금속제품	10명	- 제철, 제강, 압연 및 압출제품, 강관 등
2.식품제조업	음식료품 제조	15명	- 육류 가공 및 포장, 과일 및 채소 가공 및 저장, 낙농제품, 알콜 및 비알콜음료, 떡류, 빵류, 과자류, 면류, 장류(간장, 고추장 등), 커피가공(차류) 등 그 외 기타 식료품
3.도매 및 소매업	도소매서비스	15명	- 음식료품 도소매, 산업·가정용품 도소매, 기계장비 및 관련물품 도소매, 문화·오락 및 여가용품 도소매 등 기타 상품 도소매업
4.숙박 및 음식점업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15명	- 호텔, 펜션(한옥민박), 수련시설, 기타 관광숙박시설 - 한식, 중식, 일식 등 기타 외국식, 구내식당, 출장음식, 이동음식(푸드트럭) 등 유사 음식점
5.폐기물 및 재활용	폐기물처리 및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	15명	- 매립, 소각 등 폐기물 처리업, 금속(폐차량, 폐컴퓨터, 금속추출)및 비금속 원료재생업(유리,플라스틱, 고무 등), 기타 환경정화 복원업
6.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사업지원서비스	15명	- 연구개발업, 법무·회계 및 세무관련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경영컨설팅 서비스업, 과학기술관련 전문서비스(건축 및 토목엔지니어링, 식품검사·화학검사, 자동차품질검사, 각종 사진 및 비디오 촬영, 축산·애완동물 치료서비스 등)
7.사업지원 서비스업 (6)	1.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20명	- 거주 복지시설, 산후조리원, 기타 비거주 복지시설
	2.문화 및 기타서비스	20명	- 여행사 및 여행보조사업, 공연시설 및 제작관련, 경기장 운영 등 스포츠 및 문화서비스
	3.교육서비스업	20명	- 일반교과학원, 스포츠학원, 외국어학원, 일반교습, 사회교육시설 등 교육지원 서비스
	4.수리기술서비스	20명	- 기계 및 장비수리(건설, 일반기계, PC 등)
	5.세탁, 세차, 기타 서비스업	20명	- 세탁, 세차, 이미용 등
	6. 건물·산업설비 청소 등 인력공급및 알선서비스	20명	- 청소, 소독, 방제서비스 등

○ 지원규모

사업유형	교부금액 산정	지원규모
기업인증형	총지원금 = 추가 고용인원(명) × 5백만원 + 고용환경개선 기본자금 1억	개소당 최대 2억원 이내
모기업연계형	총지원금 = 목표고용인원(명) × 1천만원 + 기업설립 기본자금 1억	개소당 최대 3억원 이내
시장형사업단발전형	2억원	개소당 2억원
브릿지형	1억원	개소당 1억원
시니어직능형	총지원금 = 추가 고용인원(명) × 5백만원 + 고용환경개선 기본자금 1억	개소당 최대 3억원 이내

○ 지원 방식

- (교부기간) 지정연도 포함하여 3년간 분할교부

(지정연도 60% → 1년차 20% → 2년차 20%)

※ 브릿지형은 지정연도 전액교부

- (교부조건) 지정연도 이후 연차별 고용목표 달성 및 대응투자(해당시) 이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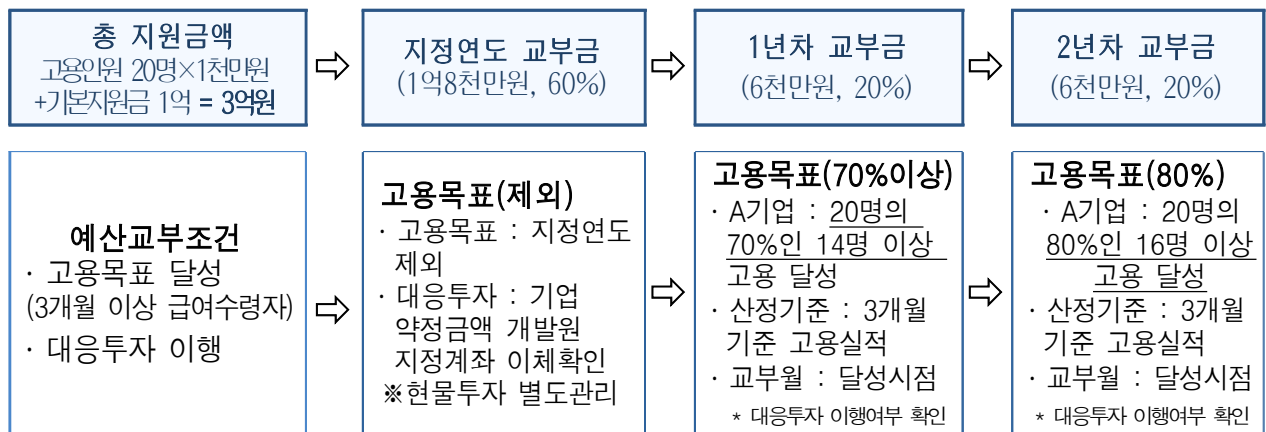
※ 기업인증형의 경우 추가고용 실적 달성을 위해 기 근로자의 인위적 감원 조치 제한(적발시 해당 실적 미인정)

※ 고용목표의 최종 달성시점은 기업설립 후 안정화 단계가 필요함에 따라 지정 연도 제외 1년 ~ 3년차로 설정

<유형별 고용목표 설정 >

구분	기업인증형	모기업연계형	시장형사업단발전형	브릿지형	시니어직능형
고용목표 설정	1년 차 ~ 100%	1년차 70%, 2년차 80%, 3년차 100%	1년 차 ~ 100%	1년 차 ~ 100%	1년차 70%, 2년차 80%, 3년차 100%

예) A기업의 모기업연계형 유형 신청 고용인원이 20명일 경우



- (고용실적 인정기준) 연중 3개월 이상 급여실적 있는 자(만60세 이상)

○ 지원항목(붙임 3 참고)

- (기업인증형) 고령자친화기업 운영 기본 사업비(임차비, 시설투자비, 자산취득비, 재료비 등), 관리운영비 등
- (모기업연계형, 시니어직능형) 고령자친화기업 운영 기본 사업비(임차비, 시설투자비, 자산취득비, 재료비 등), 관리운영비 등
- (시장형사업단발전형, 브릿지형) 초기투자비(시설투자비, 자산취득비 등) 및 인건비

※ 시장형사업단발전형의 경우 사업단 운영 노하우를 전수하고, 고친으로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지정년도 제외 1년 동안 전담인력 배치 지원

#### 4. 성장지원 및 운영관리

○ 성장지원

- 지원대상 : 지정된 고령자친화기업
- 지원내용 : 제품개발, 인증지원, 판로개척, 교육지원, 경영지원(세무, 노무, 법무)

○ 운영관리

- 관리기간 : 지정년도 이후 5년
- 점검주기 : 연 4회(정기 현장점검 2회, 비정기 2회)
- 점검항목 : 계약이행 여부, 회계, 노무 등 지침 준수여부

#### 5. 공모 및 신청안내

- 공모기간 : 2018. 3. 9.(금) ~ 2018. 4. 20.(금)
- 제출방법 : 우편접수(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
- 제출기간 : 2018. 4. 20(금)까지

※ 접수마감 시한 내('18. 4. 20, 18:00)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공통) (서식1 참조)

- 신청서 및 부속서류(서약서, 사업계획요약서, 사업계획서, 기업(법인)현황(해당시), 대응투자 이행계획서(해당시), 신용정보 조회·제공 및 활용동의서 각 1부
- 사업계획서관련 증빙서류(견적서 등) 일체
- 법인정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각 1부(해당시)
- 컨소시엄 구성·운영 협약서 사본 1부(해당시, 공증필수)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해당시)
- 법인 재무제표(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1부(해당시)
- 컨소시엄의 경우 고친기업 설립시 주식 취득비율(해당시)
- 관리인력(전문인력) 인건비 산정시 근거자료 제출
  - ※ 전문인력에 대한 이력서, 최근 2년이내 소득 증빙자료(급여내역서, 소득세 자료 등)
  - ※ 급여지원 기준은 보조금은 월 200만원 한도, 대응투자금은 월 300만원 한도에서 책정 가능

○ 유형별 추가 제출서류

① 기업인증형

- 성명, 생년월일과 재직기간 및 기타 근로조건이 기재된 전체 근로자 명부 사본 1부(접수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분)
  - ※ 근로자명부 내 만 60세 이상 근로자는 별도로 표시할 것
- 만 60세 이상 재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1부(접수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분)
-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접수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분)
  - ※ 임금대장 내 만 60세 이상 근로자는 별도로 표시할 것
- 4대보험 납부증명원 및 가입자 명부 1부(접수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분)



## ② 모기업연계형

- 고령자친화기업 사업장(부지 등) 설립형태 증빙 자료(임차, 매입, 신축 등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성명, 생년월일과 재직기간 및 기타 근로조건이 기재된 전체 근로자 명부 사본 1부(공고일 기준)

※ 근로자명부 내 만 60세 이상 근로자는 별도로 표시할 것

## ③ 시장형사업단 발전형 : 시장형사업단 종결 보고서(전년도)

## ④ 브릿지형 : 고령자친화기업 사업장(부지 등) 설립형태 증빙 자료 (임차, 매입, 신축 등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⑤ 시니어직능형 추가 제출서류) 퇴직자 회원명부

○ 제출처 : 해당지역 관할 한국노인인력개발원(지역본부)

접수처	관할지역	주 소	연락처
서강지역본부	서울,강원	(4559)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243 평광빌딩 10층	02)6203-0963
부울경지역본부	부산,울산,경남	(47512) 부산광역시 연제구 가재대로 255 아이브전 빌딩 3층	051)507-6375
대구경북지역본부	대구,경북	(42038) 대구광역시 수성구 화랑로56 (만촌동 1356-18) 효창빌딩 6층	053)759-1900
경인지역본부	경기,인천	(21344)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 641 근영프라자 10층	070)8858-8905
호남지역본부	광주,전남,전북	(61234) 광주광역시 북구 제봉로324(중흥동700-5) SRB 빌딩 6층	062)365-8817
제주지사	제주	(6319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165, 고용복지플러스센터 5층	064)805-3078
중부지역본부	대전,충북,충남,세종	(35233)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81 KTGO빌딩 5층	042)476-9890

## 6. 사업기관 심사 및 선정

### ○ 선정절차

심사단계	1차 심사(서류·현장심사)	2차 심사(선정심사)
심사구분	서류 및 현장심사	사전브리핑 및 본 심사
심사담당	1차 심사위원회 * 본원·지역본부·외부전문가 등	중앙심의위원회 * 복지부, 개발원, 외부전문가로 구성
심사기간	'18.4.23(월) ~ 5.11(금) 예정	'18.5.17(목) ~ 5.18(금) 예정
주요내용	서류 및 현장심사를 통한 사실관계 확인 등	비즈니스모델 및 재무건정성 등 검토 신청기관별 제안발표를 통한 최종선정

#### \* 설립지원

: 각 신청기관은 신청 전·후에 아이템의 사업성 검토, 시장 조사·분석, 관련기관 협의, 사업계획서 검토·보완 등 개발원에 사업계획 검토요청 가능

\*\* **세부 심사일정 및 심사결과**는 지역본부에서 개별통보하며, 1차 심사에 통과된 사업에 한해 2차 심사 진행

### ○ 선정기준(붙임 2 참고)

- 사업내용, 수행능력(모기업 역량, 사업화능력), 사업계획서, 사업효과, 대응 투자(해당시)의 5개 영역으로 공모 유형별 구분하여 선정

\* 기업재무 건전성 평가(기업인증형, 모기업연계형) : 부채비율, 유동비율, 매출액, 소송정보 등

\*\* 사업화능력 평가(시장형사업단발전형, 브릿지형, 시니어직능형) : 상품 및 서비스개발능력, 보유기술, 운용인력 전문성 등 사업화가능성

※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심의위원회 심의과정을 통해 일부 예비합격 후보군을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최종 심사 후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http://www.kordi.or.kr>) 게시 및 선정기관 개별 통보

- 통보예정일 : 선정 심사 후 7일 이내

## 7. 기타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결과 기관별 점수 등 세부 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 선정기관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고령자친화기업 운영 안내」 등 보조금 사업수행과 관련한 법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조치할 수 있음
- 문의처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자립지원부(031-8035-7562) 또는 관할 지역본부

<참고 1> 2018년 고령자친화기업 유형

<붙임 1> 고령자친화기업 공모 신청서

<붙임 1-1> 서약서

<붙임 1-2> 사업계획 요약서

<붙임 1-3> 고령자친화기업 사업계획서

<붙임 1-4> 기업(법인) 현황

<붙임 1-5> 대응투자 이행계획서

<붙임 1-6> 신용정보 조회·제공 및 활용 동의서

<붙임 2> 고령자친화기업 선정기준

<붙임 3> 고령자친화기업 예산편성 기준

참고 1

2018년 고령자친화기업 유형

	기업인증형	모기업연계형	지역특화형		시니어직능형
			시장형사업단발전형	브릿지형	
신청자격	업종별 고령자 기준고용율(1~23%)을 충족한 기업중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60+ 추가고용(최소 10명 이상, 4대 보험 가입, 최저임금 준수)을 창출할 있는 기업(인력과견 유사업종은 지원 제외)	공고일 기준 이전 고령자(만60세 이상)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적합한 직종에서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을 신규 설립 가능한 법인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시장형 사업단을 수행중인 법인 또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 ※ 전년도 성과진단 결과 2등급 이상	지역내 소규모 사업을 운영 중 또는 계획 중인 법인 또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	전문경력을 보유한 모기업 퇴직자로 구성되며 모기업 및 직능단체(퇴직자단체, 직능단체)에 등록된 법인
대응투자	면제	지원 신청액 70% 이상	면제	면제	지원 신청액 70% 이상(직장형), 지원 신청액 20% 이상(직능형)
보조금 지원규모	개소당 최대 2억원 이내	개소당 최대 3억원 이내	2억원	1억원	개소당 최대 3억원 이내
최소 고용인원	10명	10명 ~ 20명	10명	5명	10명 ~ 20명
교부금액 산정	추가 고용인원(명) × 5백만원 + 고용환경 개선 기본자금 1억	고용인원(명) × 1천만원 + 기업설립 기본자금 1억	2억원	1억원	고용인원(명) × 1천만원 + 기업설립 기본자금 1억
교부기간	지정년도 포함 3년간 분할교부	지정년도 포함 3년간 분할교부	지정년도 포함 3년간 분할교부	지정년도 전액교부	지정년도 포함 3년간 분할교부
지원항목	기본사업비, 관리운영비 등	고령자친화기업 운영 기본 사업비, 관리운영비 등	초기투자비(시설투자비, 자산 취득비 등) 및 인건비 ※ 보조금의 20% 내 참여자 인건비 편성 가능	초기투자비(시설투자비, 장비 구입비 등) 및 인건비 ※ 보조금의 10% 내 참여자 인건비 편성 가능	고령자친화기업 운영 기본 사업비, 관리운영비 등
고용목표 설정(지정년도 제외)	1년차 ~ 100%	1년차 70%, 2년차 80%, 3년차 ~ 100%	1년차 ~ 100%	1년차 ~ 100%	1년차 70%, 2년차 80%, 3년차 ~ 100%

	기업인증형	모기업연계형	지역특화형		시니어직능형
			시장형사업단발전형	브릿지형	
고용실적 인정기준	연중 3개월 이상 급여실적 있는자				
공동 제출서류	신청서 및 부속서류(서약서, 사업계획요약서, 사업계획서, 기업(법인)현황(해당시), 대응투자이행계획서(해당시), 신용정보 조회·제공 및 활용동의서) 각 1부, 사업계획서관련 증빙서류(견적서 등) 일체, 법인정관 1부(해당시), 법인등기부등본 1부(해당시), 사업자등록증 1부(해당시), 컨소시엄 구성·운영 협약서 사본 1부(해당시, 공증필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해당시), 법인 재무제표(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1부(해당시), 컨소시엄의 경우 고친기업 설립시 주식 취득비율(해당시), 관리인력(전문인력) 인건비 산정시 근거자료 제출				
유형별 추가제출 서류	전체 근로자 명부 사본 1부(접수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분), 만 60세 이상 재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1부(접수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분),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접수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분), 4대보험 납부증명원 및 가입자 명부 1부(접수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분)	고령자친화기업 사업장(부지 등) 설립형태 증빙 자료(임차, 매입, 신축 등 증비할 수 있는 자료), 전체 근로자 명부 사본 1부(공고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분)	시장형사업단 종결 보고서(전년도)	고령자친화기업 사업장(부지 등) 설립형태 증빙 자료(임차, 매입, 신축 등 증비할 수 있는 자료)	퇴직자 회원명부
설립형태	해당없음	상법상 회사	상법상 회사, (사회적)협동조합	상법상 회사, (사회적)협동조합	상법상 회사
성장지원	제품개발, 인증지원, 판로개척, 교육지원, 경영지원 등 성장지원 컨설팅 제공				
관리기간	지정년도 제외 5년 관리				
운영관리	연 4회 현장점검(정기 현장점검 2회, 비정기 2회)				
이행보증보험가입	보조금 교부금액 이행보증보험 가입(관리기간)				

## 고령자친화기업 신청서류 작성 안내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는 고령자친화기업 공모계획을 토대로 신청서 서식의 작성요령에 따라 명확하게 작성
  - 본 공모 계획에 예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및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지로 첨부하여 추가 제안할 수 있음
    -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최대한 반영
- 사업계획서 상의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는 반드시 명시
- ‘~할 수도 있다’, ‘가능할 것이다’, ‘~할 예정이다’, ‘~할 계획이다’ 등과 같이 애매한 표현은 제안 심사 시 신청기관의 수행능력 부족 및 사전준비 미흡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반드시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전 조율된(컨소시엄형태) 내용만을 기재할 것
- 신청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별첨으로 반드시 제출
- 계획서에는 반드시 페이지수(Page)를 기재
- 모든 증빙자료는 신청서 1권으로 합철하고, 별도 목차 작성
- 신청서 7부(원본 1부, 사본 6부) 및 CD 1매 제출
  - 제출은 등기우편 및 방문제출 (택배제출 불가)

붙임1. [별지 제1호 서식]

접수번호	
------	--

사업유형	<input type="checkbox"/> 기업인증형 <input type="checkbox"/> 모기업연계형 <input type="checkbox"/> 시장형사업단발전형 <input type="checkbox"/> 브릿지형 <input type="checkbox"/> 시니어직능형
------	---

## 고령자친화기업 공모신청서

사업명	※ 제안 사업명 적시(사업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10자 이내) (업종: )		
기업명	※ 고령자친화기업명(설립예정 기업명) 적시		
(대표)기업명	※ 공모 신청기관(기업, 법인)명 적시		
대응투자기관명	※ 대응투자기관(기업)명 적시, 없을 경우 공란 처리		
사업예산	정부지원 신청금액	금	원정 (₩ 원)
	대응투자	현금	원정 (₩ 원)
		현물	원정 (₩ 원)
	총사업액	금	원정 (₩ 원)
고용인원		총인원 : 00명 (60세 이상 0명, 전체근로자의 0%)	
기업인증형 유형 신청기업 근로자 현황 (기업인증형 유형만 작성)		업종 : (기준 고용률 : %) 전체 근로자 : 명 만60세 이상 근로자 : 명	
대표기관 (기업)	기관명	기관 대표	
	전화	F A X	
	e-mail	※ 기관(기업) 메일 주소 작성	
	사업총괄 책임자	직 위	성 명
	주소		

2018년      월      일

(대표)기업명 :

(인)

- ※ 첨부서류
- 1. 서약서 1부
  - 2. 사업계획 요약서 1부
  - 3. 사업계획서 1부
  - 4. 기업(법인)현황 1부
  - 5. 대응투자 이행계획서 1부
  - 6. 신용정보 조회·제공 및 활용동의서 1부. 끝.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 귀하

# 서약서

고령자친화기업 신청 관련 서류를 제출함에 있어 다음 사항에 대해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원취소 및 향후 고령자친화기업에 대한 참여 제한 등의 처분을 감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제반 현황자료가 2018년 월 일 현재 해당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게 작성한다.
2. 신청서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고의적인 오류가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본 기관(기업)은 사업과 관련하여 요청되는 자료 및 문의사항에 대해서 성실히 협조한다.
4. 본 기관(기업)은 사업에 참가함에 있어 철저한 사전준비 및 사업계획에 따른 진행으로 소기의 성과(목적)를 달성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2018년 월 일

대표기관(기업)명 :

(인)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 귀하



### 사업계획 요약서(1page)

- 사 업 명 00000 -

구 분	주요 내용	비 고																																																																																
기 업 명	※ 고령자친화 기업명(설립예정 기업명) 적시																																																																																	
사업목적	○																																																																																	
사업내용	○ ※ 사업내용을 간략히 기재 (예시) 친환경 수제빵 생산 및 납품, 지역내 공공기관 및 학교급식 납품 ※ 생산되는 제품 또는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 등을 소개																																																																																	
사업대상 및 시장분석	○ ※ 주요 사업대상(관련 거래처 등) 및 시장현황 구체적으로 조사, 분석 요망																																																																																	
예산개요	○ 수입계획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bottom: 5px;">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cccccc;"> <th>구분</th> <th>합계</th> <th>'18년</th> <th>'19년</th> <th>'20년</th> <th>'21년</th> <th>'22년</th> <th>'23년</th> </tr> </thead> <tbody> <tr> <td>합계</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보조금</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대응투자</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사업수익</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 지출계획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cccccc;"> <th>구분</th> <th>합계</th> <th>'18년</th> <th>'19년</th> <th>'20년</th> <th>'21년</th> <th>'22년</th> <th>'23년</th> </tr> </thead> <tbody> <tr> <td>합계</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인건비</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사업비</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관리운영비</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합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합계								보조금								대응투자								사업수익								구분	합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합계								인건비								사업비								관리운영비								
구분	합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합계																																																																																		
보조금																																																																																		
대응투자																																																																																		
사업수익																																																																																		
구분	합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합계																																																																																		
인건비																																																																																		
사업비																																																																																		
관리운영비																																																																																		
성과목표	○ 지정연도 이후 관리기간(5년) 내 고용창출 성과목표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5px;"> <thead> <tr> <th></th> <th>2019년</th> <th>2020년</th> <th>2021년</th> <th>2022년</th> <th>2023년</th> </tr> </thead> <tbody> <tr> <td>60세 이상 고용창출 목표 (3개월이상급여자)</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60세 이상 고용창출 목표 (3개월이상급여자)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60세 이상 고용창출 목표 (3개월이상급여자)																																																																																		
향후 추진일정	(예시) ○ 2018.05 : 설립을 위한 인,허가 신청 ○ 2018.06 : 기업 설립 완료 ○ 2018.09 : 사업 중간보고 ○ 2018.12 : 당해연도 사업 결과 보고																																																																																	

접수번호

-



**2018년 고령자친화기업 공모**

#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2018. 00**

**(주)000(신청기업, 법인명)**

**2018년 고령자친화기업 사업계획서**

○○○

**2018. 00**

신청기업(법인)명

## < 목 차 >

### I. 사업개요

1. 사업목적..... p
2. 사업내용..... p
3. 참여주체..... p
4. 성과목표..... p

### II. 세부 내용

1. 시장분석..... p
2. 사업실적..... p
3. 생산(제조) 계획..... p
4. 마케팅 계획..... p
5. 노인인력 활용 계획..... p
6. 추진 일정..... p

### III. 예산계획

1. 사업비 구성..... p
2. 보조금 집행개요..... p
3. 대응투자 집행개요..... p
4. 예산집행계획..... p
5. 예상 손익계산서..... p







## 1. 사업비 구성

(단위 : 원)

구 분	총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사업보조금							
대응투자금							
매출수입							
합 계							

## 2. 보조금 집행 개요(총괄)

(단위 : 원)

비목	세목	세세목	금액	산출내역
	총 계			
인건비	소계			
사업비	소계			
관 리 운 영 비	소계			

○ 2018년 집행개요

(단위 : 원)

비목	세목	세세목	금액	산출내역
	총 계			
인건비	소계			
사업비	소계			
관 리 운영비	소계			

○ 2019년 집행개요

(단위 : 원)

비목	세목	세세목	금액	산출내역
	총 계			
인건비	소계			
사업비	소계			
관 리 운영비	소계			



○ 2020년 집행개요

(단위 : 원)

비목	세목	세세목	금액	산출내역
	총 계			
인건비	소계			
사업비	소계			
관 리 운영비	소계			

3. 대응투자 집행 개요(총괄)

(단위 : 원)

비목	세목	세세목	금액	산출내역
	총 계			
인건비	소계			
사업비	소계			
관 리 운영비	소계			

○ 2018년 집행개요

(단위 : 원)

비목	세목	세세목	금액	산출내역
	총 계			
인건비	소계			
사업비	소계			
관 리 운영비	소계			

○ 2019년 집행개요

(단위 : 원)

비목	세목	세세목	금액	산출내역
	총 계			
인건비	소계			
사업비	소계			
관 리 운영비	소계			

○ 2020년 집행개요

(단위 : 원)

비목	세목	세세목	금액	산출내역
	총 계			
인건비	소계			
사업비	소계			
관 리 운영비	소계			

## 4. 예산집행계획

(단위 : 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자 금	보조금							
	대응투자							
	사업수익							
	계							
발 생 비 용	인건비							
	사 업 비	임차비						
		시설투자비						
		자산취득비						
		재료비						
		교육및훈련비						
		컨설팅지원비						
		홍보활동비						
	운영수당							
	관리운영비							
	차년이월							
	계							

## 5. 예상 손익계산서

(단위 : 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매출액							
제조 원가	소계						
	재료비						
	노무비						
	경비						
매출총이익(손실)							
판매 관리비	소계						
	급여						
	복리후생비						
	세금과공과						
	기타경비						
영업이익(손실)							
영업외수익							
영업외비용							
세전이익(손실)							
법인세 등							
당기순이익							
영업이익율							
당기순이익율							

## 기업(법인) 현황

기관(기업)명			
대표자	(   년   월   일생)	최종학력	
주소			TEL
			FAX
설립년월일	년   월   일	홈페이지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자본금		종업원수	
사업책임자		사업자등록번호	
C.P		E-MAIL	
설립목적			
기관(기업)연혁			
주요사업내용			
최근 2년간 정부 및 지자체 지원내용	부처명	지원사업	연간지원액
조직체계 및 현황			

※ 필요시 별지사용

## 대응투자 이행계획서

사업명			
투자기관(기업)명		총괄책임자	

위 사업수행을 위해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고령자 친화기업」 설립·운영 지원사업 시행지침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현금 및 현물을 다음과 같이 성실히 제공할 것을 확인합니다.

### - 총 사업기간 중 연차별 대응투자 계획 -

(단위: 원)

구분	합계	2018년	2019년	2020년
금액				

○ 현금 대응투자 계획

- 대응투자 총액 : 000원
- 이행일정 : 2018. 00. 00 ~ 2018. 00. 00
- 이행방식 : 예시) 자본금 출자 등

○ 현물 대응투자 계획

- 현물투자 총액 : 000원
- 투자대상 : 예시) 부동산 출자, 시설장비류 및 차량운반구 등
- 투자방식 : 예시) 임차, 소유권이전, 대여 등
- 이행일정 : 2018. 00. 00일 까지
- ※ 임차 및 대여는 기간을 명시

2018년    월    일

투자기관(기업)명

(인)

## 2018년 고령자친화기업 신용정보 조회·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재)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 15조 제1항 제 1호, 제 17조 제1항 제1호, 제 24조 제1항 제1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제 32조 제2항 및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제공·조회 하는 것에 동의하며, 이 동의서는 상기 사업의 갱신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합니다.

### 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사항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신청자격 심사 및 사후 관리를 위하여 신용조회회사에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집·이용됩니다.

수집·이용할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개인(신용)정보 :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개인(신용)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본인에 대한 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기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단, 신용정보 제공·동의를 효력 기간 종료 후에는 채무불이행 관련 분쟁해결, 민원처리 및 법령상 의무이행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 2.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 대상기관

▶ 신용조회회사 : [필요에 따라 신용조회회사 기재]

제공·조회할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별, 연락처 등]
- ▶ 신용거래정보 : [상기사업 이전 및 이후의 대출, 카드, 채무보증 거래내용 등]
- ▶ 신용능력정보 : [신용도 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의 재산, 채무, 소득 총액 등]
- ▶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등]
- ▶ 신용등급 및 평점정보 등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기간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조회결과 귀하와의 공모사업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모사업종료일까지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이 지속됩니다. 단, 조회결과 귀하가 신청한 상기 사업의 설정이 거절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합니다.

### 3. 기업(신용)정보의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귀하의 기업(신용)정보는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신청자격 심사 및 사후 관리를 위하여 신용조회회사에 귀하의 기업(신용)정보를 조회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집·이용됩니다.

제공·조회 대상기관

- ▶ 신용조회회사 : [필요에 따라 신용조회회사 기재]

제공·조회할 기업(신용)정보의 항목

- ▶ 신용조사·평가업무
- ▶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재무제표 등 일체의 세무관련 자료를 서면 또는 디지털화된 문서로 수령하는 행위
- ▶ 기업신용정보 : [기업개요표, 재무제표, 부가가치세자료, 부속증빙서류 등의 자료에 의한 신용조사 정보]
-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신용정보

기업(신용)정보의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기간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조회결과 귀하와의 공모사업이 개시되는 경우





붙임 2. 고령자친화기업 선정기준

## 고령자친화기업 선정기준(기업인증형)

심사영역	심사항목	배점
사업내용 (30)	사업내용 적합성(사업의 타당성, 구체성, 사업계획과의 부합성 등)	10
	노인업무 적합성(노동강도, 기술난이도, 대인관계 등)	10
	시장경쟁력 확보 가능성 (경쟁력확보여부 및 경쟁우위 요소, 사업수요의 지속성 등)	10
수행능력 : 건전성평가 (50)	기업건전성 / 부채비율 * 평가기준 : 전년도(부채총계*100/자본총계)	10
	기업건전성 / 유동비율 * 평가기준 : 전년도(유동자산*100)/유동부채)	10
	기업건전성 / 매출액 증가율 * 평가기준 : (당기매출액-전기매출액) *100/전기매출액)	10
	기업건전성 / 매출액 영업이익률 * 평가기준 : 전년도(영업이익*100)/매출액	5
	전문인력(자격)확보 및 관련기술 보유 (운영인력 전문성, 보유기술 등)	15
사업계획 (30)	시장조사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시장 및 상품·서비스에 대한 이해수준, 계획의 구체성 등)	15
	손익계산과 예산집행의 적정성(수익타당성, 수익실현 방법 등)	15
사업효과 (40)	고용창출 효과(신규고용창출 가능성, 수익창출을 통한 고용유지 등)	20
	추가 연계사업 확대가능성(폭 넓은 전후방 연관사업, 파급효과 등)	10
	지역사회 파급 효과 및 인식개선 (사회문제해결, 고령자 인식개선 및 커뮤니케이션 통로 다양화 등)	10
신용정보 (감점)	모기업(기관) 신용정보 평가 * 평가기준 : 채무불이행, 소송정보, 법정관리/화의, 당좌거래정지 이력 등 해당 시 각 2점 감점	-
<b>합 계</b>		<b>150</b>

- \* 최근 2년간의 재무제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및 사업후보지는 현장확인
- \* 재무건전성 평가가 어려운 기업(업력 2년 이내 신생기업 등)은 항목별 별도기준 적용
- \* 전문인력이란 제공하는 서비스를 직접 공급하는 인력으로서 정규직과 프리랜서 포함.

## 고령자친화기업 선정기준(모기업연계형)

심사영역	심사항목	배점
사업내용 (30)	사업내용 적합성(사업의 타당성, 구체성, 사업계획과의 부합성 등)	10
	노인업무 적합성(노동강도, 기술난이도, 대인관계 등)	10
	시장경쟁력 확보 가능성 (경쟁력확보여부 및 경쟁우위 요소, 사업 수요의 지속성 등)	10
수행능력 : 건전성평가 (50)	기업건전성 / 부채비율 * 평가기준 : 전년도 (부채총계*100/자본총계)	10
	기업건전성 / 유동비율 * 평가기준 : 전년도(유동자산*100)/유동부채)	10
	기업건전성 / 매출액 증가율 * 평가기준 : (당기매출액-전기매출액) *100/전기매출액)	10
	기업건전성 / 매출액 영업이익률 * 평가기준 : 전년도 (영업이익*100)/매출액	5
	전문인력(자격)확보 및 관련기술 보유 (운영인력 전문성, 보유기술 등)	15
사업계획 (30)	시장조사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시장 및 상품·서비스에 대한 이해수준, 계획의 구체성 등)	15
	손익계산과 예산집행의 적정성(수익타당성, 수익실현 방법 등)	15
사업효과 (30)	고용창출 효과(신규고용창출 가능성, 수익창출을 통한 고용유지 등)	10
	추가 연계사업 확대가능성(폭 넓은 전후방 연관사업, 파급효과 등)	10
	지역사회 파급 효과 및 인식개선 (사회문제해결, 고령자 인식개선 및 커뮤니케이션 통로 다양화 등)	10
대응투자 (10)	대응투자 규모의 적합성 (보조금 신청액 대비 분담률, 자금유입 경로 등)	10
신용정보 (감점)	모기업(기관) 신용정보 평가 * 평가기준 : 채무불이행, 소송정보, 법정관리/화의, 당좌거래정지 이력 등 해당 시 각 2점 감점	-
합 계		150

- \* 최근 2년간의 재무제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및 사업후보지는 현장확인
- \* 재무건전성 평가가 어려운 기업(업력 2년 이내 신생기업 등)은 항목별 별도기준 적용
- \* 전문인력이란 제공하는 서비스를 직접 공급하는 인력으로서 정규직과 프리랜서 포함.

## 고령자친화기업 선정기준(시장형 · 브릿지형 · 직능형)

심사영역	심사항목	배점
사업내용 (50)	사업내용 적합성(사업의 타당성, 구체성, 사업계획과의 부합성 등)	20
	노인업무 적합성(노동강도, 기술난이도, 대인관계 등)	10
	시장경쟁력 확보 가능성 (경쟁력확보여부 및 경쟁우위 요소, 사업 수요의 지속성 등)	20
수행능력 : 사업화능력 (50)	상품 및 서비스 개발능력(자체 개발·생산설비 및 활용가능 외부설비 보유, 사업화관련 전담부서·전담인력 보유 및 배정여부)	15
	운영인력 전문성(전문인력의 해당분야 국가 및 관련단체 자격증 보유, 평균근속연수 등)	15
	기술성 보유(보유기술 경쟁력, 특수기술 보유, 독창성, 지적재산권 확보)	10
	사업화 인프라 보유(사업화를 위한 협력기관 및 인프라 구축·활용성)	10
사업계획 (20)	시장조사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시장 및 상품·서비스에 대한 이해 수준, 계획의 구체성 등)	10
	손익계산과 예산집행의 적정성(수익타당성, 수익실현 방법 등)	10
사업효과 (30)	고용창출 효과(신규고용창출 가능성, 수익창출을 통한 고용유지 등)	10
	추가 연계사업 확대가능성(폭 넓은 전후방 연관사업, 파급효과 등)	10
	지역사회 파급 효과 및 인식개선 (사회문제해결, 고령자 인식개선 및 커뮤니케이션 통로 다양화 등)	10
합 계		150

\* 전문인력이란 제공하는 서비스를 직접 공급하는 인력으로서 정규직과 프리랜서 포함.

붙임 3. 고령자친화기업 예산편성기준

## 고령자친화기업 예산편성 기준

비목	세 목	편 성 기 준
인건비	인건비* (사회보험 포함)	- 기업 운영에 필요한 전문(관리)인력 인건비 ※ 보조금으로는 참여자 인건비 편성·집행 불가 (단, 시장형사업단 발전형은 20% 범위내, 브릿지형은 10% 범위내에서 참여자 인건비 편성 가능)
사업비	임차비**	- 기업 설립·운영을 위한 부동산 임차에 관한 경비(월세) - 고가 및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시설 및 장비의 임차에 관한 경비(리스비용) ※ 임차료는 공인감정가격의 3년 소유권 리스가격으로 산정
	시설투자비	- 기업 설립·운영을 위한 시설의 신축, 개보수 및 이에 필요한 수용비, 수수료, 감정료 등
	자산취득비	- 기업 설립·운영에 필수적인 장비, 컴퓨터, 책상 등 구입 ※ 차량은 가급적 리스로 처리
	재료비	- 제품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원자재 및 재료 구입 경비
	교육·훈련비	- 전문인력 양성 및 종사자 교육훈련 사업 수행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전문교육 수강료, 경영스쿨 참가비 등)
	컨설팅지원비	- 자립화 전략 등에 대하여 전문가의 컨설팅 비용지원 - 사업수행과 관련한 네트워크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포럼, 전문가세미나, 워크숍 등)
	홍보활동비	- 신문, 방송, 홈페이지 등을 통한 해당 사업 또는 사업단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운영수당	- 각종 회의참석 수당, 자문수당, 강사수당 등
관리 운영비***	공공요금	- 전기료, 수도요금, 전화요금, 우편 요금 등 공공요금
	여비(국내)	- 사업 참여인력의 출장경비(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함)
	기타 경비	- 사무용 비품 및 집기 등 - 보고서 등 인쇄비용 - 사업 추진을 위한 내·외부 회의비용 - 기타 사업 수행을 위한 경비 등

\* 총 지원예산에서 전문인력(관리인력, 사무직원)인건비 비율은 20%내에 한함

\*\* 건물 임차시 보증금 및 권리금 제외

\*\*\* 총 지원예산에서 관리운영비 비율은 10%내에 한함